



제438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정무위원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자료보완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〉

■ 이인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294호)

2026. 8.

정 무 위 원 회

전문위원 구 현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인영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6. 4. 13.
3. 회 부 일 : 2026. 4. 1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,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기업결합의 신고 또는 기업결합 전 사전심사 요청(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)에 관하여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류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(30일)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.
- 또한, 개정안은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에 관하여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기업결합의 신고) ① ~ ⑧ (생략)	제11조(기업결합의 신고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<u>공정거래위원회</u> 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	⑨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</u> <u>에</u> -----.
⑩ (생략)	⑩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⑪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9항에 따른 심사 요청에 관</u>

현행	개정안
⑪ · ⑫ (생략) 제30조(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) ① ·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.	<u>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)은 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u> ⑫ · ⑬ (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) 제30조(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제11조제12항----- -----.

□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·인적·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 하에 통합시켜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함.¹⁾

- 기업결합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일부 사업

1) 권오승서정, 「독점규제법: 이론과 실무」, 제7판, 법문사, p.223

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(제11조제1항 및 제2항).

- 또한,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(제11조제9항)

□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인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(제11조제7항).

- 단,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기간은 120일임.

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이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(제11조제10항).

- 시행령에서는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보다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, 영 제18조제7항²⁾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신고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안 제11조제11항은 시행령 제18조제7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.
- 한편, 개정안 제11조제9항도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의 세부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109

2) 제18조(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)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 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)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